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고 제2026-6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적 고립청년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고립의 원인과 양상도 다양하여 적극적인 발굴과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나, 구 차원의 지원 근거가 없어 이들을 필요한 도움으로 이어 주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들을 발굴하여 일상 회복과 사회 참여를 돕고, 국가·서울특별시의 지원체계와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안 제3조 및 제4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발굴 및 지원 신청(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지원사업, 지원제도의 연계(안 제9조 및 제10조)

라. 비밀누설의 금지 및 개인정보 보호(안 제13조)

3. 입법예고기간: 2026. 11. 11. ~ 2026. 11. 17.(7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사무국 의사팀(전화: 2147-3662, FAX: 2147-3956, e-mail: khjjj@songpa.g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www.council.songp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